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시대에서 의사 면허의 상호인정을 위한 의학교육 평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및 의학교육연구소

허 선

Evaluation of Medical Education for the Mutual Accreditation of the Medical License in the Century of Free Trade Agreement

Sun Huh

Department of Parasitology, College of Medicine and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2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를 체결하고, 양국의 국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국제 무역 질서에 들어가서 경쟁을 하는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다. 칠레, 싱가포르, EFTA 국가와 FTA도 발표되었다. ASEAN과는 상품서비스에 이미 서명하고 투자에 대하여 협상하고 있다. 이외 캐나다, 인도, EU, 멕시코 및 일본과 FTA도 추진을 하고 있다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7a). 이와 같은 협정에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면허의 상호 인정은 아직 없다. 미국과 FTA 협정문을 보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관련 기관이 면허 및 증명에 관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고, 상호 인정에 대한 권고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하며, 그리고 당사국에 의해 상호 합의된 전문직 서비스 분야 및 하위

분야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공급자의 임시면허 약정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합의된 분야는 엔지니어링서비스, 건축서비스 및 수의 서비스이다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7b).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 상호인정을 미 정부에 요청하였지만 의사 면허는 미연방정부가 관할하지 않고 각 주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 난색을 표명하였다. 캐나다는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LCME)를 통하여 미국과 같은 잣대로 의대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캐나다 의대 출신은 미국의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지만 캐나다의 의사 면허를 미국의사면허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2006). 이와 같은 예를 보면 우리나라 의대도 LCME 기준에 맞추면 의대를 미국 의대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준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나 환경의 평가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두 나라 의대 졸업생이 과연 동등한 의사로서 역량을 지녔느냐는 것이다.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 때문에 환자에 대한 접근이 다르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표준화

교신저자: 허 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및 의학교육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
Tel: 033)248-2652, Fax: 033)241-1672
E-mail: shuh@hallym.ac.kr

된 진단과 치료 방법을 평가한다면 여러 나라 의대 졸업생 또는 재학생의 동등화가 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이런 의료인 자체에 대한 동등화가 더 필요하다. 의사국가시험을 동등화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의대재학생 또는 전공의 대상의 업무 능력 평가를 통하여 비교 가능할 것이다. 언어가 다르므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문항을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문화 차이를 반영한 시험을 internet-based testing으로 치루고 공통 문항을 이용하여 동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 EU 등에 의사 상호 면허 인정을 요구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자유무역시대에서는 외국인 의사 면허로 국내 면허 없이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다 (Supreme Court of Korea, 2008). 이 경우 우리는 외국인의 의료이므로 우리 의료법 테두리 바깥이라고 하지 말고 그 의료인이 우리나라 의료인과 동등한 의료 업무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지역이나 남미의 의사들이 연수를 받으러 오는 의료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이므로 앞으로 이런 지역의 많은 의사들이 국내에 와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 국경 없는 의사 이동을 대비하여 앞으로 국내 의대 및 병원을 다른 나라 의대 및 병원과 다양한 방법으로 동등화를 시도하여 의사 업무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미 OECD국가 교육장관들은 2008년 1월 11~12일 도쿄에서 모여 2010년부터 회원국의 대학 학력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공학, 경제학, 자연과학 등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력과 사고력 등을 측정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Joongangilbo, 2008). 앞으로 의학 분야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국경 없는 Medical VISA 시대에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Joongangilbo. 2010nyeonbuteo OECD daehak pyeongga [internet]. JOINS (Seoul). 2008 Jan 14 [cited 2008 Feb 15]. Korean. Available from: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009686.
-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Overview: accreditation and the LCME [internet]. Washington: 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2006 Jan 31 [cited 2008 Feb 15]. Available from: <http://www.lcme.org/overview.htm>
-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Policy of FTA. [internet]. Seoul: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2007a [cited 2008 Feb 15]. Available from: http://www.fta.go.kr/user/fta_korea/policy.sp
-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apter Twelve Cross Border Trade in Service [internet]. Seoul: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2007b [cited 2008 Feb 15]. Available from: http://www.mofat.go.kr/mofat/fta/eng_0707/2E29.pdf
- Supreme Court of Korea. Law on the indictment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Area [internet]. Seoul: Supreme Court of Korea; c2008 [cited 2008 Feb 15]. Available from: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l/jbsonl14.jsp>